

예산총칙

제1조 :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460,573,213	13,817,196
1. 일반회계	442,222,273	13,266,668
2. 특별회계	18,350,940	550,528
의료보호기금	984,745	29,542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2,106,999	63,210
주차장	13,937,536	418,126
주거환경개선사업	346,982	10,409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285,252	8,558
지하수관리	689,426	20,683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4조 :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5조 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,400,000천원이다.

제6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2,339,509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